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9. 16.(금) 10:3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2년 9월 7일

○ 회부일자: 2022년 9월 13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2013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전자태그 부착 물품관리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35조)

○ 물품 분류기준 구체화 및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금액기준 상향(별표 1)

-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으로 내용연수, 내구성·소모성 및 물품 관리 필요성, 취득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선 (안 별표1)

- 내용연수 1년미만 물품을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취득단가 기준을 기존 5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조정 (안 별표1 품종 구분 기준)
- 내용연수 1년이상 물품을 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취득단가 기준을 기존 3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조정 (안 별표1 품종구분 기준)
- 물품의 수입 또는 구입 후 대장에 등재하는 적용 시점을 부칙으로 규정(안 부칙 제2조)
- 불용품 소요조회 대상 및 방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개선 (안 제16조)
 - 소요조회 방법: 금액 구분 없이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탑재
- 불용품 매각가격 결정시 감정평가 근거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 17조)
-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근거 법령을 반영(안 제23조)
 - 물품의 잃어버림·훼손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변상 처리 하도록 변경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하급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에 대한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22조)
 - “교육청” 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
-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7조, 안 제28조)
 - “경리관” 을 “재무관” 으로 변경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른 순화대상 용어와 띄어쓰기, 문장 정비 등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분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과 물품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위임사무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른 순화대상 용어와 띄어쓰기, 문장 정비 등을 개정함
- 안 제5조, 제6조는 물품의 분류와 정리구분을 별표로 규정하는 조항으로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으로 내용연수, 내구성·소모성 및 물품 관리 필요성, 취득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하는 등 물품 분류기준을 구체화하고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금액기준 상향하는 내용임(별표 1)
- 해당 내용은 내용연수 1년미만 물품을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취득단가 기준을 기존 5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내용연수 1년이상 물품을 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취득단가 기준을 기존 3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조정함

- 이는 지난 2013년 조례 개정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소모품, 비품 (비소모품)의 구분기준을 새로이 정하는 내용으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순화대상 용어 교체와 띄어쓰기, 문장 정비 대상 조항임
- 안 제16조는 불용품 소요조회 대상 및 방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개선하는 내용으로 소요조회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안 제17조는 불용품 매각가격 결정시 감정평가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안 제23조는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에 관한 근거 법령을 반영하여 물품의 잃어버림·훼손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변상처리 하도록 변경함
- 안 제35조는 전자태그 부착 물품관리 의무화 규정을 신설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3년 개정 이후 현실에 맞는 비소모품, 소모품의 구분 기준을 정하고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부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며,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개선·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다만, 물품의 잃어버림·훼손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변상처리 하도록 변경하는 조항의 경우 상위법 준용으로 기존 조례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 삭제되어 해당 내용을 규정할 규칙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